

# 2021년도 제3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2. 27.(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950건(안건번호 제2021-182146호~18544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82146호~182164호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본건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여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안건번호 제2021-182163호, 182164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82165호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음원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게시물로,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도록 돕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82166호, 182167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일부 분량을 편집하여 제공 중인 사안으로, 특별한 편집이 더해진 바 없이 단순히 앞뒤 부분을 잘라내어 추출한 영상에 대하여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합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점, 기타 단순한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다르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82168호~182205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86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577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9520호~2009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의 총 577개 URL 정보에 관하여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8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6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95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182146호~185448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82146호~18216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오픈마켓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본

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사안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제시하면서)다만, 안전번호 제 2021-182163호, 182164호는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82146호~1821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기존의 심의대상 게시물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으로, 본 건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요구됨.
- C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은 경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며 저작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2146호~182162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 2021-182163호, 182164호는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8216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에서 국내 작곡가 그룹의 앨범 전곡을 음원파일 형태에 따라 mp3는 20,000원에, wav는 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는 ‘직접결제’ 방식을 통하여 해당 음원파일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 제공하는 유의사항에 따르면 ‘직접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문의 채팅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할 것을 권하고 있음. 또한 게시자가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 “◎◎◎◎”라고 작성한 것으로 보아, 게시자는 “○○○○”의 앱에서 제공하는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 상담, 입금 정보 제공, 음원파일 전송 방법 안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만으로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 게시자가 음원파일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스크린샷을 함께 게시하였으나 해당 스크린샷만으로는 해당 음원파일이 불법복제물이라거나, 별도의 전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없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1 채팅 또는 안전결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 거래의 특성상 일반 카페의 불법복제물 판매 게시물과는 달리 댓글란을 통하여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하여, 제2021-10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에서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 파일을 3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또한 제2021-189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에서 아이돌 그룹의 온라인 콘서트 영상을 불법적으로 녹화한 파일을 판매 중인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의 간접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의 성질상 게시물 자체만으로도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합법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인정하였으나 심의일 당시 게시물이 삭제되어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한 바 있음.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8216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도록 돕는 저작권 침해정보로 판단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기존 심의결과에 따라 카페의 성질상 게시물 자체만으로도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동의함.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2165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82166호, 182167호는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의 영상저작물 일부를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1-182166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전체 분량(95분) 중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의 앞뒤 장면을 잘라 추출하여 이용 중이며, 전체 분량의 1/3인 약 31분을 이용하고 있음. 동일한 저작물을 캡처한 사진 25개 및 간단한 설명을 함께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은 □□□에서 가지고 온 것임을 밝히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1-182167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회차 일부분을 “△△△”이라는 게시판에서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2개의 게시물 모두 시리즈의 1~3화 분량 중 짧게는 약 6분부터 길게는 12분까지 이용 중이며, 안전번호 제2021-182166호와 동일하게 별도의 편집 없이 앞뒤 장면을 잘라 추출한 형태임.  
 원저작물은 웨이브(wavve), 라프텔 등 OTT 서비스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82166호, 18216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게시물의 성격이 원저작물 매니아의 단순 취미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A 위원: 블로그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블로그 소개를 제시하면서)교육 공부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부 관련 게시물을 많이 올리고 있음.  
(블로그 전체글 목록을 제시하면서)“△△△”이라는 게시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회차 일부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는 게시판에서 명장면 영상이 포함된 회차의 전체 분량을 제공 중일 것으로 추측됨.
- D 위원: 각 영상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 A 위원: 짧게는 약 1분부터 길게는 12분까지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 C 위원: 전문위원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불법복제물 전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최근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불법복제물 분량의 사소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C 위원: 해당 게시물 작성 목적에 영리성은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블로그에 광고가 없으므로 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해당 블로그의 경우 “▲▲▲▲▲▲▲▲▲▲▲▲▲▲▲▲”라는 게시판에서 전체 분량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일 것으로 추측됨. 최근 영상의 전체 분량을 공개할 경우 금방 단속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 블로거들이 자신이 전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토막 분량의 영상을 전체 공개로 올리고, 전체 분량의 영상은 서로 이웃에게만 공개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음.
- A 위원: 블로그 방문자나 이웃 수를 보면 적은 규모의 블로그는 아닌 것으로 보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D 위원: 동의함. 영상물 이용 형태, 블로그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합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게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특별한 편집이 더해진 바 없이 단순히 앞뒤 부분을 추출한

영상에 대하여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2166호, 182167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82168호~18544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1-182168호~18220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해외 영화, 만화 출판물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182204호, 182205호는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물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님.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SCIENTIST'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82432호는 가수 트와이스의 앨범 모두를 판매 중인 사안임. 특히 'SCIENTIST'가 수록된 앨범은 2021. 11. 12. 발매한 최신 앨범임.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Premiere Pro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82549호는 1.7GB 분량의 파일을 17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자동 인증이 되는 버전을 제공 중임. 최신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물이 많이 모니터링되고 있음.

(영화 '겨울왕국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182645호에서 20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한글 자막과 함께 제공 중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82168호~18544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82206호~18544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82146호~18544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5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9520호~20096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3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27.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